

	장학금 지급 시행세칙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1984. 8. 9.
		최종개정일자	2020.10.08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장학금 지급규정 제79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시안 작성) 장학위원장은 매 학기 다음 각 호와 같은 장학금 지급 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교내 장학금 신입생 반 별 장학 배정 인원 표(제4조 표2 참조)
2. 장학생 선정기준

제3조(교내장학금 산정) ① 장학등급별 장학금액 산정은 학생 본인의 실 납부 금액에 대한 비율제로 적용한다.<개정 2019.12.09>

구 분	장 학 금 액	비 고
A급	실 납부 금액 전액	유공자(70점 이상), 교직원 및 직계
B급	실 납부 금액 1/2	새터민(70점 이상) , 장애(1, 2, 3), 편입생
C급	실 납부 금액 1/3	형제자매(2.0), 법인,자매(2.5), 다문화(2.0), 장애(4~6))
D급	실 납부 금액 1/4	
E급	입학금 전액	입학생, 편입생
성적	A급 B급 C급 D급	A: 70%, B:35%, C:25%, D:10%

<표1 교내장학금 산정 비율 표>

제4조(교내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개정 2019.12.09>

1. 입학 장학금

가. **선발기준**<삭제> 2020.10.08>

- 전체수석, A, B, C, D 장학생은 모집인원의 입학 성적에 의해 선발한다.
- “반” 구분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이상일 경우에는 2개 “반”으로 인정하며, 59명 이하일 경우에는 1개 반으로 인정한다.

단, 정원 외 및 특별장학생은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2017. 01. 03>

- 매년 장학위원회를 통해 총원률에 따라 선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1종 전체수석<삭제> 2020.10.08>

- 전체 신입생 중에서 전체수석인 자에게 당해 학년 등록금(입학금+수업료)을 지급한다.
- 단, 재학 중에는 학업성적이 **평균 3.0** 이상일 경우에 계속 지급한다.

다. 2종 입학 성적우수 장학금<개정 2017. 01. 30><삭제> 2020.10.08>

-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반이” 추가 될 경우 1명(D급)을 추가 적용한다.
- 재입학 및 편입생은 배정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2017. 01. 03>

장학등급	1개 반	2개 반	3개 반	4개 반	5개 반	비 고
A급	1	1	1	1	1	
B급	1	1	2	3	4	
C급	1	2	3	4	5	
D급	1	2	5	6	7	
계	4	6	11	14	17	

<표2 신입생 반 별 장학 배정인원 표>

반 구분	수강인원	비고
1개 반	40명 ~ 59명	※ 40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학생 규정(표5)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개 반	60명 ~ 99명	
3개 반	100명 ~ 139명	
4개 반	140명 ~ 179명	
5개 반	180명 ~ 200명	

<표3 수강인원별 반 구분 표>

라. 승계 장학생 선발<삭제 2016.2.5>

- 신입생 장학선발 후 허수인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입생 입학사정이 종료된 이후에 허수 인원에 대하여 승계 장학생을 별도 선발하여 지급한다.(등급변경자, 신규승계자)

마. 3종 특별장학금<개정 2019.02.03><개정 2019.12.09><개정 2020.10.08>

-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정한 아래 <표4> 금액을 등록금으로 하고 차액을 특별장학금으로 한다. (단 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차액분을 장학금으로 지급가능 대상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장 학 수 혜 자 격	1학기		2~4학기	
	공학계열	사회실무	공학계열	사회실무
대안학교(목포제일정보고)	1,200,000	1,200,000	200,000	200,000
25세 이상 공학계열 / 사회계열 신입생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5세 미만 공학계열 / 사회계열 신입생	400,000	0	0	0
예체능 / 보건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과제외) 신입생	400,000	0	0	0
입학장려장학금 대상자는 입학특별장학금과 이중수혜 해당이 안됨				

<표4 특별장학금 현황 표>

2.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야간포함)<개정 2016.2.5><개정 2017.11.10><개정 2019.12.09>

가. 1개 반은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반"이 추가 될 경우 1명(D급)을 추가 적용한다.

다. 교비예산 여건에 맞게 장학위원회에서 학기별로 지급 여부 및 지급 방법을 결정한다.
 라. 후불 학생지급으로 집행한다.<개정 2019.02.03>

장학등급	1개 반	2개 반	3개 반	4개 반	5개 반	비 고
A급	1	1	1	1	1	
B급	1	2	3	3	4	
C급	1	2	3	5	6	
D급	1	3	5	6	7	
계	4	8	12	15	18	

<표5 반 별 장학등급 배정 인원 표>

반 수	수강인원 수	장학생 배정인원 수
1개 반	40명 ~ 59명	1개 반 적용
	60명 ~ 69명	1개 반 + 1명(D급)
	70명 ~ 79명	1개 반 + 2명(D급)
2개 반	80명 ~ 99명	2개 반 적용
	100명 ~ 109명	2개 반 + 1명(D급)
	110명 ~ 119명	2개 반 + 2명(D급)
3개 반	120명 ~ 139명	3개 반 적용
4개 반	140명 ~ 179명	4개 반 적용
5개 반	180명 ~ 200명	5개 반 적용

<표6 수강인원별 반 구분 및 추가인원 배정 표>

수강인원 수	등급별 인원 수
39명 ~ 30명	B급 2, C급 1, D급 1
29명 ~ 20명	B급 1, C급 1, D급 1
19명 이하	C급 1, D급 1

<표7 40명 미만 장학등급 배정 표>

3. 간호와 야간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2017. 11. 06 삭제>

가. 장학생 선발 시 반이 추가 될 경우 1명(D급)을 추가 적용한다.

장학등급	1개 반	2개 반	3개 반	4개 반	5개 반	비 고
A급	1	1	1	1	1	
B급	1	2	3	4	5	
C급	2	3	4	5	6	
D급	2	3	5	7	9	
계	6	9	13	17	21	

<표8 반(야간) 별 장학등급 배정 인원 표>

반 수	수 강 인 원
1개 반	40명 ~ 59명
2개 반	60명 ~ 99명
3개 반	100명 ~ 139명
4개 반	140명 ~ 179명
5개 반	180명 ~ 200명

<표9 학과정원 반(야간) 구분 표>

수강인원 수	등급별 인원 수
10명 ~ 19명	C급 1, D급 1
20명 ~ 29명	C급 1, D급 2
30명 ~ 39명	B급 1, C급 2, D급 2

<표10 40명 미만 장학등급(야간) 배정 표>

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자격 제한

제4조(장학생 선발 기준 및 제한)에 적용한다.

4. 형제자매 장학금<개정 2016.2.5><개정 2017.1.3>

학비 조달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제도로써 우리대학에 형제, 자매, 부부, 부자, 부녀, 모자, 모녀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으로서 2인 중 1인의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에 대하여 C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교직원(겸임교수, 조교, 계약직 포함,) 및 직계자녀 및 배우자 장학금

<개정 2012.2.21.><개정 2016.2.5.><개정 2017. 01. 30>

우리대학 재직 중에 한하여 자녀 및 배우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 1회 학위과정에 한하여 A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6. 법인산하 재직자 장학금<개정 2016.2.5>

영신·영화학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자 자녀 및 배우자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C급 장학금을 지급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7. 공로 장학금<개정2017. 01. 30><개정 2017. 11. 06 ><개정 2019.02.03.><개정 2019.12.09>

가. 총학생회 간부 및 학생 자치활동기구 간부와 우리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라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다. (단, 장학금은 예산범위에서 장학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

나. 총학생회장 및 간부, 운영위원장, 학회장(야간포함), 부학회장(야간포함), 학회총무(야간포함), 과대표(야간포함), 신문방송국, 동아리(연합회)

다.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라. 직책별 세부 지급표에 따라 지원한다. 단, 총학생회장, 부회장은 국가장학금 대상(3분위 이하)이 될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하 대상자들은 확정금액으로 지급한다.

마. 총액은 15,000,000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09>

연번	구분	장학금액)
1	총학생회장	1,000,000
2	부회장	1,000,000
3	부장	700,000
4	차장	500,000
5	운영위원장	700,000
6	학회장 (야간포함)	600,000
7	부학회장 (야간포함)	200,000
8	학회총무 (야간포함)	200,000
9	과대표 (야간포함)	300,000
10	신문·방송국(국장)	700,000
11	신문·방송국 간부	500,000
14	동아리연합회장	700,000
15	동아리연합회 간부	500,000

<표11 직책별 세부 지급표>

8. 재입학 장학금<개정 2019.02.03>

대학 졸업 후 신입생으로 재입학 시 E급(표1)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8-1 편입학 장학금<신설 2016.2.5>

4년제 및 2년제 졸업 후 일반편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시 E급(표1)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9. 보훈장학금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직전학기 성적이 환산 점수 70점(C학점)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수업료, 입학금 전액 면제)

10. 새터민 장학금

가.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새터민 본인 또는 자녀가 매학기 성적이 환산 점수 70점(C학점) 이상인 자에게 **B급 장학금**을 지급 한다.

나. 등록금(입학금+수업료)전액을 지급한다.(교비로써 등록금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11. 체육특기자 장학금<개정 2017. 01. 30>

가. 특기자라 함은 체육종목 및 예술 등에 특별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도대표 및 공인된 전국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특기자는 그 실적을 신입생인 경우

- 국가대표, 주니어대표를 역임한자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전국대회 우승 3회(개인, 단체)자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전국체전 도 대표 선발팀(예정)에 입학한 선수는 백만 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재학생은 학기말에 심사하며,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적용(표1)하여 지급한다.

- 재학 중 도 대표 선발된 팀과 개인 : 전액 장학금
- 전국대회 우승 2회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
- 전국대회 우승 1회 다음 학기 반액 장학금
- 전국대회 준우승 2회 다음 학기 반액 장학금
- 전국대회 준우승 1회 다음 학기 C급 장학금
- 전국대회 동메달 2회 다음 학기 C급 장학금

나. 운동건강과 신입생 및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전과 시에는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 기타 특기자 장학생은 체육특기자 장학제도에 관한 건을 기준으로 하며, 각종대회 성적 100점과 면접100점으로 총200점으로 하여 성적순으로 스포츠단장, 운동건강과 교수의 추천으로 총장 제청에 의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급한다.

라. 실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육상부 특기자는 실납부금의 50%로 한다.<2019.12.09. 신설>

바. 육상부 특기자 선발은 학과장 추천으로 총장이 승인한다.<2019.12.09. 신설>

12. 가계곤란장학금<개정 2017.1.3> <개정 2017.1.3><개정 2019.02.03>

가. 각종 서류 심사를 통하여 가계곤란으로 판단되는 학생 중 취득학점 및 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나. 서류 심사를 통하여 가계곤란 학생으로 판단되나, 취득학점 및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별도의 삼사를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 기타 장학금

세칙에서 정한 장학금 외 별도로 총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4. 교직원(겸임교수, 조교포함) 준비속형제 자매 및 자녀 장학금

〈개정 2012.2.21〉 〈개정 2016.2.5〉

우리대학 재직 중에 한하여 교직원 준비속형제 자매 및 그 자녀가 재학할 경우에 1회 학위과정에 한하여 매 학기 50만원 만 납부한다. 단, 매학기 성적이 2.5이상 이어야 한다. (단 재직 중에 한함)

15. 다문화 가족 장학금〈신설 2012.2.9〉〈개정 2017.1.3〉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에게 C급 장학금을 지급한다.

16. 기관장 추천 장학금〈신설 2012.2.9〉

지역 내 각급 기관장 추천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C급을 지급하며, 입학 시 한 학기에만 적용한다. 단, 한 기관에서 10명이상 신 입학 할 경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7. 교직원배우자친형제매 장학금〈신설 2012.2.21〉〈개정 2016.2.5〉

우리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배우자 친형제 자매들이 입학할 경우 1회 학위과정에 한 하여 매학기 50만원 만 납부한다. 단, 매학기 성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단 재직 중에 한함)

18. 교직원특별추천 장학금〈신설 2012.2.21〉〈개정 2016.2.5〉

우리대학 교직원의 추천으로 입학할 경우 1회 학위과정에 한하여 매학기 100만원만 납부한다. 단, 매학기 성적이 2.5이상 이어야 한다. 보건계열 제외(단 재직 중에 한함)

19. 자매결연기관 재직자 장학금

우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배우자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C급 장학금을 지급하며, 신입생의 경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20. 장애학생 특별지원 장학금〈신설 2014.2.6.〉〈개정 2017.1.3.〉〈개정 2019.12.09〉

장애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성적이 2.0이상인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 1~3등급 : B급 장학금 • (경증)장애 4~6등급 : C급 장학금 |
|--|

2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장학금〈신설 2014.2.6〉〈삭제 2016.2.5〉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소정의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

22. 학업장려 장학금〈신설 2014.2.6.〉〈개정 2017. 11. 06〉

①학업장려 장학금은 일회성 포상장학금, 튜터링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총장특별 장학금, 근로 대가성 장학금, 교재지원비, 실습지원비, 생활지원비 및 마일리지장학금 등을 말하며 등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

23. 입학장려 장학금<신설 2016.2.5>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소정에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

24. 외국인 전형 장학금<신설 2017.11.06.><개정 2018.10.10.>

- ①외국인이 우리대학에 입학 시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학금은 면제하고 재학 중에는 매학기 수업료에 20%를 장학금으로 한다.
- ②토픽 3급 취득 시 수강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준다
단, 등록금 선 감면과 외국인 전형 합반은 성적장학 선발에서는 제외한다.

•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은 (특별)전형 등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으로 입학·편입학한 경우
단, 입학 후 귀화 · 복수 국적자 · 재외국민 ·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25. 봉사 장학금<신설 2018. 10. 10>

- ①교내 및 교외 봉사활동을 한 재학생에 지급하며 증빙이 필요하다.
- ②학과, 학교 행사에 참여로 이루어진 봉사를 이야기 하며 타 기관과 연계한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도 포함한다.
- ③등록금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26. 근로 장학금<신설 2018. 10. 10>

- ①교내행정부서에 근로를 제공한 가계곤란 및 추천학생을 포함한 재적생에게 지급하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 ②시간당 근로 장학금 산정은 국가근로 장학금 기본금액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③성적 및 학점은 제외한다.

27. 해외탐방 장학금<신설 2018. 10. 10><개정 2019. 12. 09>

매 학년도 여름방학 시기에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참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우수, 가계곤란 재학생 및 기타 장학위원장 추천하는 재학생 또는 해외탐방 그룹에 지급된다.

단, 교통비만 지원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자격 제한) ①계절학기 점수를 반영하기 전 성적을 반영한다.

- ②과목점수에 가중치가 포함된 점수 합을 신청학점으로 나눈 점수평균으로 한다.
- ③순위 결정은 점수평균, 평균평점, 신청학점이 많은 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한다.
- ④장학 대상자는 과락이 없어야 하고, 매학기 12학점 이상을 신청 및 취득하여야 한다.
(단, 개설 학점이 학과 교육과정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20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
- ⑤타 지역 위탁 받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괄 장학 수혜)
- ⑥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반의 경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 ⑦공로 장학은 중복 수혜 불가(학회장, 과대, 학생회간부 겸직 시 최고등급만 인정)
- ⑧교외장학금 중 개인 후원 및 의무복무등과 관련된 교외장학금을 받을 경우와 학업장려 장학금 등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4.2.6>

제6조(교외장학생 선발)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정하거나 자격요건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하며, 특정 요건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평점이 3.0 이상인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선발한다.<개정 2019.12.09>

제6조(교외장학금 산정) 제2조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국가장학금 (당해 국가장학 기준에 준한다)

가. 국가장학 (Ⅰ 유형)

다. 국가장학 (Ⅱ 유형)

라. 전문대 우수 장학금

2. 한국마사회(KRA)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으로 농어업인 자녀로서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인 자, 재단에서 제시한 배정인원 내에서(신청자 중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3. 아산복지재단 장학금

재단에서 선정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4. 인재육성 장학금

교외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5. 성옥장학재단 장학금<삭제 2016.2.5>

재단이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며, 1학기에 선발된 장학생이 1년간 장학생이 되고, 추천은 교외장학처리순서에 의한다.

6. 보훈 장학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및 자녀로 보훈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보훈처 장학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동문회 장학금

동문회 요구 자격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8. 복지장학금

전공교재 판매 및 임대수입 등으로 매 학기 학과장 추천으로 선발한다.

9. 광주은행 장학금<삭제 2016.2.5>

광주은행 장학생 선발 규정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10. 새마을금고 장학금<삭제 2016.2.5>

새마을금고 장학생 선발 규정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11. 산학협력 장학금(병원)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장학금으로 해당 학과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며, 장학금 수혜학생은 해당 산업체에서 의무 기간 동안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기타 외부 장학금

제5조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7조(기타사항) 본 시행세칙 외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